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7. 23 선고 2021나50756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담당변호사 유제산

피고, 항소인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강진석, 곽내원, 남

기욱, 오창완

변 론 종 결 2021. 6. 25.

판 결 선 고 2021. 7. 23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22. 선고 2018가단1913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손해배상청구 부분

피고 C는 제1심 공동피고 B(이하 ‘피고 B’ 또는 ‘B’이라 한다)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

이에 대하여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부분

1.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B과 피고 C 사이에 2017. 9. 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C는 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. 9. 11. 접수 제632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D은 피고 C에게 제1항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. 12. 11. 접수 제866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(원고는, 1심에서 주위적,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를 단순 병합으로 청구형태를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사해행위 취소 부분을 일부 취하하였다)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(갑13, 을 16 내지 23)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에서의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“주위적 청구”와 “예비적 청구” 문구를 삭제하고, 제1심판결 10쪽 ④항 전체를 [피고들이 이

사건(2018가단1913) 소장 부분을 2018. 2. 1. 송달받고 2018. 2. 20. ‘이 사건 증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’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뒤, B이 2018. 3. 9.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‘피고 C가 B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B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

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’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10533 소유권이전등기)의 피고들 소송대리인(이 사건의 소송대리인과 같다)이 ‘이혼원인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’이란 취지가 포함된 답변서를 2018. 4. 2. 제출하기는 하였으나(을16 내지 18),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미 대응한 상태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, 만약 실제로 피고들 주장처럼 재산분할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인 B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인데도 이를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이 있었다고 믿기에 부족하다.]로 대체하고, [⑦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(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72029 판결,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22440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‘증여’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‘재산분할’이 아닌 ‘증여’라고 추정되고,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 추정력을 깨뜨리기에 부족하다.]를 ‘⑦’항으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결론

따라서 피고 C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1심판결이 B에 대해 인용한 108,340,290원 중 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채무자인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C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전득자인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강희석, 판사 오연정, 판사 허준서

1) 원고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를 취하하였다.